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0.(월) 배포시점 배포 2026. 4. 20.(월) 14:00

한-캐나다 '드라마·영화' 공동제작 추진

-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 위해 캐나다 방문…국제협력 본격화 -

드라마, 영화 등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 간 공동제작이 이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및 방송·미디어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21~25일 3박 5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민수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미통위 대표단은 22일(현지시각) 캐나다 문화유산부를 방문해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지난 2017년 캐나다와의 시청각 콘텐츠 공동제작 협상을 시작했으며, 2025년 국무회의 의결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조속한 협정 체결 필요성을 언급, 이번에 방미통위의 캐나다 방문으로 8년 만에 마침내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한-캐나다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 절차>

'17.12		'18.9~'23.12		'25.1		**'26.4**				'26.~
협상개시	➡	문안교섭·합의	➡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	**협정서명**	➡	국회동의 (필요시)	➡	발효·공포*

※ 서명 후 양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후 익월 1일부터 발효

이번 협정은 서명 후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공식 발효되며, 협정을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 프로그램으로 인정됨에 따라 해외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촬영장비 반입과 제작인력의 양국 출입국 시 편의제공, 정부 제작비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양국 제작사는 제작비 공동출자로 인한 비용 분산과 문화교류 활성화, 해외시장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통한 글로벌 콘텐츠 협력 기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방송의 경우 캐나다 미디어 펀드(Canada Media Fund)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동제작 지원 신청 자격을 동시에 확보, 실질적인 제작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미디어 펀드는 매년 약 3억 9천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4천억 원) 규모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중 약 84%가 방송프로그램에 할당된다.

영화의 경우에는 텔레필름 캐나다(Telefilm Canada)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며 연간 약 1억 4천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1,450억 원)의 제작 지원 예산 중 마케팅이나 기획 개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제작에는 약 8천만 캐나다 달러(약 810억 원)가 투입된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협정을 통해 공동제작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 및 제작 계획 수립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미통위 대표단은 이후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를 방문해 양국의 방송 정책 및 규제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날인 23일(현지시각)에는 캐나다 공영방송(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을 방문해 공영방송 정책과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공서비스 미디어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공동제작 협정 체결 이후 후속 조치 및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공조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양국 업계에서 오랜 기간 기다린 공동제작 협정에 마침내 서명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북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한 캐나다 대사 필립 라포르튠은 “이번 협정은 양국 간 확대되고 있는 창의적·경제적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한국과 캐나다의 제작자와 창작자들이 협력해 양국 이야기를 전 세계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개요 및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엄정환 (02-2110-1331)
		담당자	사무관	이선아 (02-2110-13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개요 및 인포그래픽**

o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경제적 교류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한-캐 FTA('15.1월 발효) 제1.6조(문화협력)제2항을 상기하며,

- 양질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이 양 당사자의 시청각 산업의 활력 증진과 경제적 및 문화적 교류 발전에 기여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함

o **(정의)** "시청각 저작물"은 길이와 형식에 관계없이, 일련의 영상, 또는 영상과 소리로 이루어진 영화,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 저작물을 말한다.

o **(국내 제작물 인정)**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을 국내제작물로 간주한다.

o **(일시입국 및 체류)** 공동제작물을 위하여 고용된 창작 및 기술 인력의 일시적 입국과 체류, 장비 반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o **(재정적 기여)** 공동제작물에 대한 각각의 최소 재정적 기여는 TV의 경우 15%, 영화 포함 기타는 20%, 다자간 공동제작물(제3국 참여)은 1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o **(저작권 및 수익)** 각 제작자별 재정적 기여에 합리적으로 비례해야 하고, 협정에 명시된 최소 재정적 기여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분쟁해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한 분쟁을 협의 및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 간 공동제작협정

공동제작협정 개념과 의미

공동제작

국적이 다른 제작자 간에 제작비와 제작 업무를 분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거나 배분하는 것

국가 간 공동제작협정

FTA에 근거하여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활성화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정부 간에 체결하는 협정

국제공동제작 방식의 2가지 유형 (제작자 선택)

① 자율적 계약 방식: 정부 협정과 무관하게 당사자 간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진행

② 국가 간 협정에 따른 방식: 정부 간 명문화한 공식 조약을 근거로 진행

→ 핵심 혜택: 협정 요건을 충족한 공식 공동제작물은 협정 당사국의 '국내제작물'로 인정받아 각국의 관련 지원 정책 및 규제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

공동제작협정 주요 혜택

- 공동제작물 혜택을 국제조약 형태로 공식화
- 국내제작물 지위 부여, 보조금 지원, 세금 면제, 출입국 편의, 장비 무관세 반입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분쟁 발생 시 국가 간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해결가능

국가 간 공동제작협정 기대효과

경제적 이익

제작재원 공동출자로 비용 분산 및 각종 편의 제공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 (제작사의 재원 부담 해소 기여)

해외 시장 확대

상대국 국내제작물 인정으로 배급 창구 확대, 수익 증가 및 인접 제3국 시장 진출 용이

문화 홍보 및 교류

양국의 문화적 전통을 홍보하고 경쟁우위 분야를 결합하여 양질의 국제적 문화상품 제작

제작지원 정책 수혜

양국의 보조금, 세제 혜택 등 국내 제작물 대상 제작지원 정책 동시 수혜 가능

글로벌 역량 강화

상호 국제협력을 증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습득하고 제작 인력의 국제적 역량 강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 활용

분쟁 해소를 위해 양국 정부 간 협의체(공동위원회 등)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공식 활용 가능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추진 배경

- 양국의 시청각 교류 촉진과 우호 증진을 통해 한류의 세계 진출 확산
  (경과) '17년 협상 개시, '95년 한-캐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양해각서 현대화 및 범위 확대

적용범위

길이와 형식에 상관없는 양 당사국 제작자의 모든 시청각 저작물

승인 절차

공동제작물에 대한 각 당사국의 승인 필수

재정적 기여

TV 공동제작은 15% 이상, 영화는 20% 이상의 재정적 기여 요구

주요 혜택

당국 승인 시 양국 모두 '국내제작물'로 간주되어 정부 재정지원 등 모든 법적 편익 향유

우리나라 체결 현황 ('26년 4월 기준)

총 체결 규모: 총 39개국(8개 국가 및 2개 지역 공동체)

EU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